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6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 : 이병도, 경기문, 김성준, 김원태, 김인제, 남창진, 박강산, 박상혁, 박영한, 박유진, 박칠성, 서상열, 서준오, 성흠제, 왕정순, 유정인, 이민옥, 이소라, 이영실, 임종국, 정준호, 최기찬, 최재란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○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최우선거치를 피해자의 보호에 두어 제명에 피해자 보호를 명시하고, 신고·조사절차에서 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및 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

나. 신고자 보호사항을 추가하여 조사에 공정성을 기함(제9조).

다. 신고센터 설치, 운영 근거를 두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수행함(제12조).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)”를 “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)”로 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·접수

2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

3.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

4.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

③ 시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제9조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) ①·② (생 략)	제9조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<신 설>	제12조(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·접수 2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.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.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에 감사·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2조 ~ 제14조 (생 략)	제13조 ~ 제15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